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0)

축주가 과도하게 항의하는 경우의 가능한 법적 조치는?

한 두 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today-we@hanmail.net



나주인씨의 반려견 멩멍이는 김명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명의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마취 중 환기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멩멍이는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나주인씨는 반려견 멩멍이가 죽자 김명의 수의사에게 거칠게 항의하였다.

김명의 수의사 또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려 했지만, 나주인씨는 어떠한 합의도 하려 하지 않았고 김명의 수의사에 대한 적개심만 쌓일 뿐이었다.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에 매일같이 찾아와 자신의 반려견 멩멍이를 살려내라며 고함을 치곤했으며 김명의 수의사가 나가달라고 한참을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여러번 명의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김명의 수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였다. 결국에는 명의동물병원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했다. 팻말에는 김명의 수의사가 마취를 잘못하여 멩멍이가 죽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김명의 수의사도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나주인씨의 행동을 참으며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주인씨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 한다.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에 의해 멩멍이가 사망한 경우라도 김명의 수의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에 의해 환축이 사망한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일정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법률칼럼 4회 연재).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가 배상책임을 질 때 지더라도 나주인씨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김명의 수의사가 나주인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1. 접근금지가처분

김명의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나주인씨가 명의동물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법원에 나주인씨가 명의동물병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김명의 수의사가 나주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현재 나주인씨가 동물병원에 찾아옴으로써 영업에 심각한 손해가 됨을 소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명한다는 것은 나주인씨의 행위로 명의동물병원의 영업에 방해가 발생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증명하면 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손해액과 손해의 발생 경위까지 밝힐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법원은 나주인씨에게 명의동물병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일정한 배상액을 부과하게 된다.

2. 형사 고소

나주인씨의 각 행위는 김명의 수의사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의 각 행위마다 해당하는 죄목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형사 고소 자체가 나주인씨의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나주인씨를 간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명의동물병원에 찾아와 고함을 친 행위

1)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나주인씨는 고함을 치며 명의동물병원에 출입하였다. 이

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란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침입죄는 동물병원과 같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의 평온이 깨진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역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혹시 김명의 수의사가 나주인씨의 명의동물병원에 출입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어차피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게 된다.

퇴거불응죄란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죄로서, 주거·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상대로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죄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 안에서 밍밍이를 살려내라며 고함을 쳤다. 만일 명의동물병원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면,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퍼뜨린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퍼뜨리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뜨리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퍼뜨릴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 안의 다른 고객들이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을 알 수 있도록 고함을 쳤으며, 이는 김명의 수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행위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3) 업무방해죄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에 찾아와서 밍밍이를 살려내라

며 고함을 쳤다. 만일 나주인씨의 고함이 병원의 직원들이나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였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력이란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나주인씨가 고함친 행위가 경우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나. 명의동물병원에 전화를 하여 협박한 행위

1) 협박죄

나주인씨는 명의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김명의 수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죄란 말 그대로 타인을 협박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김명의 수의사가 나주인씨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주인씨가 정말로 김명의 수의사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주인씨가 협박의 말을 한 것만으로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 1인시위를 한 행위

1) 명예훼손죄

나주인씨는 피켓에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행위를 적어서 1인시위를 하였다. 1인시위 자체가 합법이므로 1인시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시위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라도, 나주인씨는 1인시위를 통하여 김명의 수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 중 성형외과 앞에서 1인시위를 한 경우, 그 1인시위는 성형외과를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1인시위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나주인씨의 행위로 명의동물병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나주인씨의 행위가 매출 감소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위자료청구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의 행위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축주의 정당한 항의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나주인씨와 같은 경우는 법률이 보호하는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4. 의료과실이 있어도 자기 권리는 지켜야

보통 수의사의 과실로 축주가 항의하는 경우, 책임감 때문에 묵묵히 참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저야할 책임은 저야하지만,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과 권리는 별개의 개념이다. ☺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세요.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실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